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05호

나. 발 의 자 : 김경 의원 외 12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8월 12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에 대한 감면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빠른 회복을 위해 시행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입장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제5호).
- 나.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액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임산부가 시립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¹⁾.

나. 개정의 필요성

- 2022년 통계 기준 OECD 회원국(38개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이었으며, 우리나라는 0.78명으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 대를 나타내며 최하위를 기록했음.

지난해에는 0.72명으로 떨어지면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0.55명을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음.

- 서울시는 올해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총 1조 7,77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임산부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의료·경제·양육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마련하고 있음.

- 한편, 「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조사 결과」에

1)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를 할 책임을 지방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시장에게 부여 하고 있음.

따르면 임산부가 임신기간 중 가정에서 겪은 일 중 가장 불만족
혹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지지 부족’이라는
응답이 34.5%를 차지한바 각종 재정적인 지원책과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친화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서울시의회는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임산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 4월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제정·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임신·출산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입장료 면제(안 제9조제3항제5호)

- 「지방자치법」 제161조²⁾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³⁾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⁴⁾,

이에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중 일부에 대하여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을 반영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임산부 본인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은 관련 입법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현행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총 10개소 ([별표1] 불임)이며,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약 90만 원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 재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조사 결과」에서

3)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4) 법제처는 사용료 등 징수 및 가감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었으므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법제처 2016. 9. 22. 의견제시 16-0260).

도움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배가 나오지 않아 임신부인지 티가 나지 않아서’(50.8%)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함.

- 특히 동 개정안의 임신부 기준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신체적 외형만으로는 정책 수혜 대상자인 임신부를 판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임신부를 증빙할 수 있는 앱카드를 개발하여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보급하려는 바, 관람료 면제자격 확인 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임신부가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지갑’ 앱에 임신부 모바일 앱카드 예시 >



(2) 사용료 감액(안 제10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 앞서 기술한 입장료 면제와 마찬가지로 입법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에 감액 또한 현행 조례에서 개별 대상에 따라 감액하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사용료 감액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포함시키는 규정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동 조항에 대한 비용추계의 경우, 연평균 약 5백만 원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산부 본인의 참여에 따라 사용료 감액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수입 감소액은 관련 홍보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임산부에 대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은 그 규모를 고려해 볼 때, 특정 계층에 대한 금전적 혜택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모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로써 이해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원을 하는 데에만 역할을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 및 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예우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임.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심형준(2180-8116)
------	----------------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제1수영장	수영	
	제2수영장	수영	
	체조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야구장	야구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하키,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행사	
	위밍업실	축구, 각종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1동 914)
	야구장	야구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다목적구장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효창운동장	축구장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다목적실1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다목적실2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구의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광진구 위커힐로 57-30(구의동 164-5)
신월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6(신월동 149-2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영, 각종경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 1-6))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산악문화체험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상암동 481-231)

의안번호
200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8.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제안이유〉 ○ '24.5.20.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빠른회복을 위해 임산부 본인에 대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주요 입법 요지〉 ○ 임산부 본인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면제(안 제9조제3항제5호) ○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에 임산부 본인 추가(안 제10조제1호가목 및 안 제10조제2호가목)				
추진경과	○ 2024. 8. 12. 조례안 발의(대표 발의 : 김경 의원) - (발의자) 김규남, 남창진, 아이수루, 유정희, 이종환 의원 등 13명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장료 등 감면)와 관련하여, 임산부 본인에 대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출산 후 빠른 회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 해당없음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남규하(☎2133-2677)	담당	방준흠(☎2133-2678)